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10·29이태원참사피해자
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
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0·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휘직 기간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0조의5 신설)

-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천만 원으로 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나. 종전 치유휘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종전 치유휘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다. 치유평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평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감사원 등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서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2.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참사의 원인 또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
3.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 또는 지연되었을 것
4.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금액)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를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

회에 상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과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5(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6년 5월 11일 이전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휵직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치유휵직 개시 예정일을 말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중 “시행 후”를 “시행일(법률 제21334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 제2호 중 “합니다”를 “하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로 하고, 유의사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법률 제21334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도 같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주 귀하 밑에 첨부서류란을 신설한다.

첨부서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함)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6년 5월 11일 이전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u> <u>법 제42조의2제1항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 · 감사원 등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서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u> <u>2.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참사의 원인 또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u> <u>3.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 또는 지연되었을 것</u> <u>4. 해당 진술, 증거 또는 정보가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u>
<u><신 설></u>	<u>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금액)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u>

<신 설>

각 호를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 · 의결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3천만 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
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
금과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
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금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신 설>

제26조(치유희직의 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치유희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치유희직 변경 신청서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생 략)

2. 치유희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희직 기간
만료일 <단서 신설>

3. · 4. (생 략)

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5(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
요한 사항) 제10조의2부터 제10
조의4까지에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다.

제26조(치유희직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2026년 5월 11일
이전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희직을 연장하려는 경우
에는 연장하려는 치유희직 개
시 예정일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
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
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
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
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원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4039